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 -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3
------------	-----

2014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10월 27일, 박운기 의원 외 14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교통위원회(2014년 12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운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가용 자동차 및 렌트카 등을 승객과 연결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콜 서비스(일명, “우버 택시”)가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형태의 알선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와 렌트카의 유상운송 및 알선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알선 영업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콜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인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 마련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고객과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일명 “렌트카”)를 연결해 주고, 이 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신규 사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의 미비로 인해 동 사업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음
-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행위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운송행위 알선행위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 다.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기타사항 : 없음
-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원안 동의

### 3. 이송처

- 국 회 : 국회의장
- 정 부 :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승객과 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일명 “렌트카”)를 연결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가 등장하였으나 현행 법령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는 바,

신규 형태의 유상운송 알선업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최근 등장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 서비스”는 자가용 자동차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고객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1조는 자가용 소유자와 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85조(면허취소 등) 및 법 제90조(벌칙) 등에서는 최대 “면허취소”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객과 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연결해 주는 신규 형태의 알선업체가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령 개정은 필요할 것이며, 동 건의안에 대해서 서울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p><b>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b>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p> <p>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b>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li> <li>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li> </ol> <p>② 생략</p>
---

- 이와 함께 특별한 법적 기준 없이 영업을 하는 우버 서비스로 인해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택시운전사 자격, 요금, 보험가입 및 사고시 대책, 차량 정비 등의 운행 관련 사항 등에 있어 일정 수준의 규제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업계가 피해를 볼 소지가 크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도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최근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고 이와 관련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법령이 미비되어 있고, 기존 업계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형태의 영업서비스를 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새로운 영업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면서 기존 업계와 상생·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우버 서비스 논란은 법적 문제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 신규 형태의 택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 업계 스스로도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자정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

택시업계는 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 증대, 대리운전 및 자가용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승객과 자가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를 연결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택시유사영업 행위를 하는 업체(이하 “우버 택시”)가 나타나 택시 업계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최근에 등장한 우버 택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유경제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자가용 자동차 등을 유상운송에 이용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우버 택시의 경우 부적격자를 고용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요금부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 및 사고발생시 승객의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 법령에서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기반의 유상운송 알선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시민의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4.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